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799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강정일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5. 2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가단509423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9. 체결된 매매계약을 90,000,000원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8. 2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F이 있었다. F은 2016. 11. 24.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7. 1. 20.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2307호로 신고수리 심판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0161호로 D이 망인의 재산을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음을 주장하며 D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9. 26.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 A에게 116,802,508원, 원고 B에게 89,802,5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D은 2016. 7. 9. 그 소유1)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주택에는 2014. 9. 30.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가 있다가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16. 10.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D에 대한 유류분 반환 채권은 2016. 8. 25. 망인의 사망으로 성립하였고, D은 그 직전인 2016. 7. 9.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채권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의 말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사해행위 당시 망인이 생존해 있어 유류분 반환 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유류분 반환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인 유류분 반환 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써,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판단할 여지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광현, 판사 최호식, 판사 이정형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4층 다세대주택

1층 77.50㎡

2층 87.63㎡

3층 87.63㎡

4층 64.80㎡

옥탑 10.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 15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72.4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55분의 40.09.끝.

1) 갑 제3호증에는 소유자가 G로 되어 있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3.자 2016호기10021호 결정으로 G 명의의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었고, D이라는 성명으로 인적 사항이 정리되었다.